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802호, 2019.12.10. 공포, 2020. 6.11. 시행)에 따라 개정 법 조항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행령 내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학·경력 기술자 등의 승급을 허용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내 인용조항 정비 및 자구수정
(안 제3조, 안 제9조, 안 제19조, 안 제21조)

나.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 위탁업무에 전력 기술인의 인정 및 취소·정지 등의 업무 포함(안 제28조제2항 제1호의2 내지 제3호)

다. 국가기술자격이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경력을 갖춘 경우 중급 기술자 및 감리원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1], [별표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2020. 3. 9. ~ 4. 20.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력기술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전력기술인”을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력 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조”를 “법 제7조의2제3항”으로,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경력수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력수첩”을 “경력수첩 및 경력 확인서”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1조제7항”을 “법 제11조제8항”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전단 중 “제9조”를 “법 제7조의2”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8조”는 “법 제12조제6항”으로, “경력수첩””을 ““경력수첩””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의2. 법 제7조의2 및 제8조의2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인정 및 그 취소·정지
 2. 법 제1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설계사 면허의 발급 및 그 취소·정지
 3. 법 제12조제3항 및 제10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인정 및 그 취소·정지
-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전력기술인의 구분) <u>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u>	제3조(전력기술인의 구분) <u>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력기술인"-----</u> ----- ----.
제9조(전력기술인의 경력신고 등) ① <u>전력기술인</u> 의 등급 또는 경력의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이나 경력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전력기술인의 경력신고 등) ① <u>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력기술인</u> ----- ----- -----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전력기술인이 <u>법 제8조에 따른 전력기술인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u> 또는 경력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 ----- ----- ----- <u>법 제7조의2제3항</u> ----- ----- ----- ----- <u>경력수첩</u>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경력수첩의 발급, 경력 확인, 경력 산정의 기준 및 경력의 신고·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설계도서의 보관의무)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보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1. ~ 3. (생략)

제21조(감리원의 자격 등) ① (생략)

② 감리원의 경력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력기술인"은 "감리원"으로, "법 제8조"는 "법 제12조제6항"으로, "경력수첩"은 "감리원 수첩"으로 본다.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삭제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인 단체에 위탁한다.

③ -----
-- 경력수첩 및 경력확인서-----

-----.

제19조(설계도서의 보관의무) 법 제11조제8항-----

-----.

-----.

1. ~ 3. (현행과 같음)

제21조(감리원의 자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7조의2-----.
-----, "경력수첩"

-----.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

-----.

1. (생략) <u><신설></u>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설계사 <u>면허의 발급</u> 3.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u>자격 확인</u> 4. 5. (생략)	1. (현행과 같음) <u>1의2. 법 7조의2 및 제8조의2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인정 및 그 취소· 정지</u> 2. 법 제1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u>설계사 면허의 발급 및 그 취소·정지</u> 3. 법 제12조제3항 및 제10항에 따른 <u>감리원의 자격 인정 및 그 취소·정지</u> 4. 5. (현행과 같음)
---	--

[별표 1]

전력기술인의 구분(제3조 관련)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특급 기술자	○기술사	
고급 기술자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 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기술자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 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졸업한 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3년 이상 전력기 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된 사람으로서 졸업한 후 또는 이 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6 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거나 이 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 정된 사람으로서 졸업한 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9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졸업한 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1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기술자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졸업한 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1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졸업한 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이

	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졸업한 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력기술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서 제7조의7에 따라 전력기술인 양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	--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란 각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종목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기술사: 발송배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건축전기 설비

나. 기능장: 전기

다.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마. 기능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2. 위 표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전력기술 관련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석사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전력기술 관련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에서 전력기술 관련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다.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전력기술 관련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라.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대학에서 전력기술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위 표에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전력기술 관련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육군3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전력기술 관련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다. 전력기술 관련 교육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또는 국가가 인정할 수 있는 전력기술 분야 교육기관에서 2년 과정 이상의 전력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전력기술 관련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3년 이상 교육을 이수하고 중퇴한 사람

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전문대학에서 전력기술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위 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전력기술 관련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사람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

- 1) 전력기술 관련 교육원 또는 국가가 인정할 수 있는 전력 분야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전력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 병과, 시설 병과 등의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전력 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3)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전력기술 관련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하고 중퇴한 사람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전력기술 관련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학과명에 전기과, 전기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등 “전기”가 포함된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공학군 또는 공학부 등의 경우에는 가목에 해당하는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전력기술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다.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력심사위원회가 정한 전력기술 관련 학과목을 전체 이수학점의 30퍼센트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7. 위 표에서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 전력기술 관련 분야에서 전력시설물의 계획, 조사, 설계, 설계감리, 시공, 시험, 검사, 공사감독, 공사감리, 안전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사람과 공병 병과, 발전 병과 또는 시설 병과에서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를 한 사람을 말하며, 그 경력 인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 범위, 전력기술 관련 학과 및 학력·경력 인정 범위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2]

감리원의 자격(제21조제1항 관련)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특급 감리원	○기술사	
고급 감리원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 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감리원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 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 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졸업한 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3년 이상 전력기 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된 사람으로서 졸업한 후 또는 이 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6 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거나 이 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 정된 사람으로서 졸업한 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9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졸업한 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1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감리원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력기술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서 제7조의7에 따라 감리원 양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국가기술자격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각 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기술사: 발송배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건축전기 설비, 전기안전

나. 기능장: 전기

다.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마. 기능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2. 위 표에서 “학력·경력자”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전력기술 관련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국내 나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제2호에서 “전력기술 관련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학과명에 전기과, 전기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등 “전기”가 포함된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공학군 또는 공학부 등의 경우에는 가목에 해당하는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전력기술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다.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력심사위원회가 정한 전력기술 관련 학과목을 전체 이수학점의 30퍼센트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4. 제2호에서 “국내나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1)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에서 전력기술 관련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전력기술 관련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1) 「육군3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전력기술 관련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전력기술 관련 교육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또는 국가가 인정할 수 있는 전력기술 분야 교육기관에서 2년 과정 이상의 전력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전력기술 관련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3년 이상 교육을 이수하고 중퇴한 사람

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사람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

1) 전력기술 관련 교육원 또는 국가가 인정할 수 있는 전력 분야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전력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 병과, 시설 병과 등의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전력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전력기술 관련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하고 중퇴한 사람

5. 위 표에서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 전력기술 관련 분야에서 전력시설물의 계획, 조사, 설계, 설계감리, 시공, 시험, 검사, 공사감독, 공사감리, 안전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사람과 공병 병과, 발전 병과 또는 시설 병과에서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를 한 사람을 말하며, 그 경력 인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 범위, 전력기술 관련 학과 및 학력·경력 인정 범위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5159